

의안번호	2211041
의 퇴 인	김교홍 의원
회 답 일	2025. 6. 24.
추계번호	25F3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3조의4 (산업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산업위기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 대상: 2028.12.31.까지 투자분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3조의4 (산업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내국인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산업위기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법인·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63조의4 신설)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곳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의미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력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위축된 지역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의미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이 존재하고, 지정 공고된 지역 구분에 따른 기업의 투자액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2025년 6월 현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전남 여수 1곳이 지정된 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존재하지 않음
 - 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적용되고, 전북 군산 및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에 대한 전체 지정기간 5년으로 추가 연장 불가

[표 2] 산업위기지역 지정공고 연혁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¹⁾			
공고	지역	기간	비고	공고	지역	기간	비고
제2025-369호	전남 여수	2025.5.1.~2027.4.30.	2년 ³⁾	제2022-328호	전북 군산	2022.4.5.~2023.4.4.	1년
제2022-904호	경북 포항	2022.10.31.~2024.10.30.	2년 ³⁾	제2021-442호	울산 동구 등	2021.5.29.~2023.5.28.	2년 연장 ²⁾
				제2020-173호	전북 군산	2020.4.5.~2022.4.4.	2년 연장
				제2019-271호	울산 동구 등	2019.5.29.~2021.5.28.	2년 연장
				제2018-336호	울산 동구 등	2018.5.29.~2019.5.28.	1년
				제2018-204호	전북 군산	2018.4.5.~2020.4.4.	2년

주: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2.18.] [법률 제18408호, 2021.8.17.]

부칙 제3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2)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 전체 지정기간 5년 이하

3)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2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